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공무원을 “군경” 과 분리하여 명시〉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90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이달회의의원 등 11인
2. 제 출 일: 2025. 11. 6.
3. 회 부 일: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그 각각의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회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상 “군경”으로 규정된 용어에 “소방”을 추가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第23條(報償) 이 法の 罪를 범한 者를 申告 또는 逮捕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와 死亡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공상군경</u> 또는 <u>순직군경</u> 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재해부상군경</u> 또는 <u>재해사망군경</u> 의 유족으로 보아 報償할 수 있다.	第23條(報償) ----- ----- ----- ----- ----- ----- <u>공상군경소방</u> ----- <u>순직군경소방</u> ----- ----- --- <u>재해부상군경소방</u> ----- <u>재</u> <u>해사망군경소방</u> ----- -----.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 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자 혹은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 또는 그 유족이나,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 또는 그 유족으로 보고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적용 대상자로 “공상군경”, “순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을 규정하면서 군인,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¹⁾.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적용대상 범위에는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경찰만을 포함하는 “군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군경소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하려는 입법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이 법에 입법정책적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상 ‘소방’ 법문이 추가되면 그에 맞추어 관련된 다른 법률의 용어를 단순히 정비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특히,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입장과, 북한이 대남적화전락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찬반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과 같이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군경소방”으로 용어만 수정하는 것으로 이 법의 개정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법제원리상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법문이 정리된다면, 각각의 개정안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 법 등 다른 법률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방식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임.

그 밖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과, 국가보훈부는 명칭 변경에 대한 해당 법안 심의를 선행한 이후에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논의 경과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함²⁾.

문 의 처
02)6788-5057

2) 2건의 개정안은 2025. 11. 7. 정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계류되어 있음.